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기 관 명 충청남도 공주시, 서산시, 예산군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 등”이라한다)의 의무사용 건설공사¹⁾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1)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2014.3.6. 기준)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 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는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1. 공주시(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가. 공주시 ○○○○국 ○○과

공주시 ○○과는 아래 [표1]과 같이 “○○~○○ 간 농도(○○○호) 확포장 공사” 등 2개의 농어촌도로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농어촌 도로	○○~○○ 간 농도(○○○호) 확포장공사	○○면 ○○리~ ○○리	L=2.1Km, B=9.0m	2016.03.30	2019.04.03	
2	농어촌 도로	○○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면 ○○리	L=1.1Km, B=7.5m	2016.05.17	2018.01.21	

※ 공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공사구간 1킬로미터 이 상의 신설 또는 확포장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 간 농도(○○○호) 확포장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를 하면서 순환골재는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한 반면,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도 않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2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와 관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주시 ○○과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간 농도(○○○호) 확포장공사	2016.03.30	2019.04.03	반영	미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2	○○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6.05.17	2018.01.21	반영	미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 공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공주시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와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 공주시 ○○○○국 ○○과

공주시 ○○과는 아래 [표3]과 같이 “2014 ○○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2차)” 등 10개의 주차장 관련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3]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주차장	2014 ○○지역 ○○주차장 조성사업(2차)	공주시 ○○동 310-3	주차장 조성 1식	2014. 10. 10	2015. 03. 30	
2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주시 ○○읍 ○○리 300-2	주차장 조성 1식	2015. 06. 02	2015. 08. 13	
3	주차장	2015년 ○○주차장 (○○터널)조성공사	공주시 ○○동 109	주차장 조성 1식	2015. 07. 28	2015. 10. 05	
4	주차장	2015년 ○○주차장 (○○동)조성공사	공주시 ○○동 280-14	주차장 조성 1식	2015. 06. 02	2015. 08. 12	
5	주차장	2015년 ○○주차장 (○○○○길)조성공사	공주시 ○○동 73-56외 2필지	주차장 조성 1식	2015. 06. 04	2015. 05. 31	
6	주차장	2015년 ○○주차장 (○○○○길)조성공사	공주시 ○○동 산11-14	주차장 조성 1식	2016. 03. 30	2016. 05. 30	
7	주차장	○○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주시 ○○동 106	주차장 조성 1식	2016. 04. 12	2016. 11. 04	
8	주차장	○○주차장(○○동) 조성공사	공주시 ○○동 250-5	주차장 조성 1식	2017. 07. 20	2017. 09. 18	
9	주차장	○○주차장(○○동) 조성공사	공주시 ○○동 606-9	주차장 조성 1식	2017. 07. 20	2017. 09. 18	
10	주차장	○○주차장(○○리) 조성공사	공주시 ○○읍 ○○리 337	주차장 조성 1식	2017. 10. 24	2017. 12. 02	

※ 공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4]와 같이 “2014 ○○지역 ○○주차장 조성사업(2차)” 등 10개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차장(○○리) 조성공사를 제외한 9개의 건설공사는 준공처리 하였다.

[표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2014 ○○지역 ○○주차장 조성사업(2차)	2014. 10. 10	2015.03.30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5.06.02	2015.08.13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3	2015년 ○○주차장(○○터널)조성공사	2015.07.28	2015. 10.05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4	2015년 ○○주차장(○○동)조성공사	2015.06.02	2015.08.1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5	2015년 ○○주차장(○○○○길)조성공사	2015.06.04	2015.05.31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6	2015년 ○○주차장(○○○길)조성공사	2016.03.30	2016.05.30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7	○○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16.04.12	2016. 11.0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8	○○주차장(○○동) 조성공사	2017.07.20	2017.09.18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9	○○주차장(○○동) 조성공사	2017.07.20	2017.09.18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0	○○주차장(○○리) 조성공사	2017. 10.24	2017. 12.0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 공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공주시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와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 공주시 ○○국 ○○○○과

공주시 ○○○○과는 아래 [표5]과 같이 “○○ ○○리 시립탁구장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5]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주차장	○○ ○○리 시립탁구장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리 906번지	아스콘 포장 A=3,865㎡	2016.03.04	2016.04.08	

※ 공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 ○○리 시립탁구장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표6]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리 시립탁구장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016.03.04	2016.04.08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 공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공주시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와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라. 공주시 ○○○○국 ○○○○과(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업무 소홀)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의 통보와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국 ○○○○과 소관의 순환골재 등에 관한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공주시 ○○○○과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로부터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을 미준수하고 사용계획서의 미제출 및 사용 실적을 미보고한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7]과 같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을 위반한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

[표7]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

구분	대상(위반) 건설공사	설계 미반영 (미사용)	사용계획서 미제출	사용실적 미보고	비고
○○○○국 ○○과	0(0) 2(2)	- 2	- 2	- -	준공 준공 전
○○○○국 ○○과	9(9) 1(1)	9 1	0 0	0 -	준공 준공 전
○○국 ○○○○과	1(1) 0(0)	1 -	0 -	0 -	준공 준공 전
계	10(10) 3(3)	10 3	0 2	0 -	준공 준공 전

※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공주시 ○○○○과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 등에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서산시(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가. 서산시 ○○○○국 ○○○○과

서산시 ○○○○과는 아래 [표8]과 같이 “○○○○○○○ 일반산업단지 진입 도로 개설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8]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일반 도로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서산시 ○○면 ○리 일원	L=2.0km B=20m	2014.05.07	2016.09.14	
2	일반 도로	○○ ○○○○○○연구특구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서산시 ○○면 ○○리 일원	B=11.5m, L=3.46km	2017.07.03	2019.07.02	

※ 서산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 1킬로미터 이상의 도로공사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9]와 같이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1개의 건설공사는 준공하였다.

[표9]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일반산업 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4.05.07	2016.09.14	해당 없음	미반영	-	-	위반 (준공)
2	○○ ○○○○○○연구특구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2017.07.03	2019.07.0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 서산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서산시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 서산시 ○○○○국 ○○과

서산시 ○○과는 아래 [표10]과 같이 “○○간선도로(○○~○○) 개설공사” 등 16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0]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 분	사 업 명	공 사 위 치	사 업 량	착 공 일	준 공 (예 정)일	비 고
1	도시계 획도로	○○간선도로 (○○~○○) 개설공사	○○동 ~ ○○동	L=2.2km, B=27m	2016.02.22	2018.09.06	
2	농어촌 도로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면 ○○리	L=1,190m, B=7.5m	2014.06.03	2015.08.19	
3	농어촌 도로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면 ○○리	L=1,410m, B=6 ~ 7.5m	2015.03.02	2017.05.08	
4	농어촌 도로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면 ○○리	L=1,317m, B=6.0m	2015.08.25	2016.10.14	
5	농어촌 도로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면 ○○리	L=1069m, B=6.5m	2016.04.05	2017.05.24	
6	시도	○○○호선(○○구간) 확포장공사	○○면 ○○리	L=940m, B=10m	2016.04.13	2017.06.21	
7	농어촌 도로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면○○리	L=1,002m, B=6.5m	2016.04.25	2017.04.24	
8	농어촌 도로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면 ○○리	L=840m, B=7.5m	2016.06.07	2017.09.25	
9	농어촌 도로	○○선(○○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읍 ○○리	L=880m, B=8.0m	2016.07.06	2017.11.03	
10	농어촌 도로	○○○○(1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읍 ○○리	L=388m, B=8.5m	2016.11.22	2017.11.05	
11	농어촌 도로	○○선(1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읍 ○○리	L=680m, B=8.0m	2017.05.24	2018.03.30	
12	농어촌 도로	○○선(2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면 ○○리	L=810m, B=6.5m	2017.03.29	2018.01.28	
13	농어촌 도로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면 ○○리	L=430m, B=7.5 ~ 12m	2017.03.21	2018.01.14	
14	농어촌 도로	○○선 농어촌도로(갈산동 2차)농어촌도로확포장	서산시 ○○동	L=440m, B=8.5m	2017.11.06	2018.05.05	
15	농어촌 도로	농어촌도로(○○○호) 확포장공사	○○읍 ○○리	L=200m, B=8.0m	2017.07.12	2018.01.07	
16	시도	○○○○호선 확포장공사	○○읍 ○○리	L=1,200m, B=8.0m	2017.10.10	2018.10.09	

※ 서산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²⁾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2) 2016. 5. 31 이후 발주기준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

등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1]과 같이 “○○간선도로(○○~○○) 개설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는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14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며, 9개의 건설공사는 준공하였다.

그리고 순환골재를 사용한 “○○간선도로(○○~○○) 개설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1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간선도로 (○○~○○) 개설공사	2016.02.22	2018.09.06	반영	미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2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4.06.03	2015.08.1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3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5.03.02	2017.05.08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4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5.08.25	2016.10.1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5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6.04.05	2017.05.2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6	○○○호선(○○구간) 확포장공사	2016.04.13	2017.06.21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7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6.04.25	2017.04.2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8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6.06.07	2017.09.25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9	○○선(○○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6.07.06	2017.11.03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0	○○○선(1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6.11.22	2017.11.05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1	○○선(1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7.05.24	2018.03.30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2	○○선(2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7.03.29	2018.01.28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13	○○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017.03.21	2018.01.1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14	○○선 농어촌도로(○○동2차)농 어촌도로확포장	2017.11.06	2018.05.05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15	농어촌도로(○○○호) 확포장공사	2017.07.12	2018.01.07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16	○○○○호선 확포장공사	2017.10.10	2018.10.09	반영	미반영	미제출		위반 (공사중)

※ 서산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서산시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와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 서산시 ○○○○국 ○○과

서산시 ○○과는 아래 [표12]와 같이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2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공공하 수처리 시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소규모공공하수처 리시설건설공사)	서산시 ○○면 ○○리 58-16	260톤/일, 12.1km	2015.03.18	2017.05.09	
2	공공하 수처리 시설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 비사업(○○○소규모공공하 수처리시설건설공사)	서산시 ○○면 ○○리 1664	50톤/일, 2.03km	2015.09.07	2017.10.29	

※ 서산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3]과 같이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는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한 2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준공검사 전에 제

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표 1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소규모공공 하수처리시설건설공사)	2015.03.18	2017.05.09	미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위반 (준공)
2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소규모공 공하수처리시설건설공사)	2015.09.07	2017.10.29	미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위반 (준공)

※ 서산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서산시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와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라. 서산시 ○○○○국 ○○○○과(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업무 소홀)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의 통보와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국 환경 보전과 소관의 순환골재 등에 관한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서산시 ○○○○과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을 미준수하고 사용계획서의 미제출 및 사용실적을 미보고한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4]와 같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을 위반한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

[표 14]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

구분	대상(위반) 건설공사	설계 미반영(미사용)	사용계획서 미제출	사용실적 미보고	비고
○○○○국	1(1)	1	0	0	준공
○○○○과	1(1)	1	0	-	준공 전
○○○○국	9(9)	9	0	0	준공
○○과	7(7)	7	2	-	준공 전
○○○○국	2(2)	2	2	2	준공
○○과	0(0)	-	-	-	준공 전
계	12(12) 8(8)	12 8	2 2	2 -	준공 준공 전

※ 서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서산시 ○○○○과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에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예산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가. 예산군 ○○과

예산군 ○○과는 아래 [표15]와 같이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5]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일반 도로	예산○○○일반산업 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면 ○○리~ ○○리	국도확장, 도시계획 도로신설 L=3.25km, B=10~20m	2015.02.02	2017.11.14	

※ 예산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대상 건설 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6]과 같이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표16]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예산○○○일반산업단지 진 입도로 개설공사	2015.02.02	2017.11.14	반영	반영	제출	미제출	위반 (준공)

※ 예산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예산군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나. 예산군 ○○○○과

예산군 ○○○○과는 [표17]과 같이 “○○○ ○○ 테마도로 조성사업” 건설 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7]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일반 도로	○○○ ○○ 테마도로 조성사업	○○면 ○○리~○○리 일원	L=1.85km, B=12m	2015.03.02	2016.06.12	

※ 예산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 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8]과 같이 “○○○ ○○ 테마도로 조성사업”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는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표18]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 ○○ 테마도로 조성사업	2015.03.02	2016.06.12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제출	위반 (준공)

※ 예산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예산군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와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 예산군 ○○○○과

예산군 ○○○○과는 아래 [표19]와 같이 “○○~○○간(○○○호) 도로확포장공사” 등 23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19]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 고
1	일반 도로	○○~○○간(○○○호) 도로확포장공사	○○면 ○○○내	도로확포장 L=1,054m, B=5.5m	2014.11.11	2015.11.17	
2	일반 도로	○○~○○간(○○○○○호)) 도로확포장공사	○○면 ○○리 지내	도로확포장 L=1,010m, B=8.5m	2016.04.11	2016.11.19	
3	일반	○○~○○간(○○○○○호	○○읍 ○리	도로확포장	2016.05.27	2016.11.22	

연번	구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 고
	도로	) 도로확포장공사	일원	L=1,013m, B=7.5m			
4	일반 도로	○○~○○간(○○○○○호) 도로확포장공사	○○면 ○리 일원	도로확포장 L=900m, B=5.5m	2017.04.04	2018.03.29	
5	일반 도로	○○~○○간(○○○○○호) 도로확포장사업	○○읍 ○리 일원	도로확포장 L=1,090m, B=5.5m	2017.06.27	2018.06.28	
6	일반 도로	○○~○○간(○○○○○호) 도로확포장사업	○○면 ○리 일원	도로확포장 L=800m, B=5.5m	2017.03.31	2017.09.26	
7	주차장	○○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읍 리 일원	포장공 A=1,490㎡	2014.05.07	2014.11.02	
8	주차장	○○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읍 ○리 일원	예산읍 공영주차 장 조성 1식	2014.10.20	2014.12.08	
9	주차장	2015 소형임차주차장 조성사업	○○리, ○리 일원	소형임차주차장 조성 3식	2015.04.20	2015.05.18	
10	주차장	2015년 소형임차주차장 조성사업	○○리, ○리 일원	소형임차주차장 조성 2식	2015.09.08	2015.10.06	
11	주차장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읍 ○○○리 일원	신례원 공영주차장 조성 1식	2015.10.14	2016.01.11	
12	주차장	○○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면 ○리 일원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1식	2015.10.28	2016.07.20	
13	주차장	2016. 임차주차장 조성사업	○○읍 ○리 일원	보조기층 A=1,470㎡	2016.04.21	2016.06.19	
14	주차장	○○읍 ○리 ○주차장 조성공사	○○읍 ○리 일원	○○주차장 설치 1개소	2017.04.21	2017.05.18	
15	주차장	○○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읍 ○리 일원	주차장 신축 1식	2017.05.12	2017.06.25	
16	주차장	○○ 공영주차장 포장공사	○○면 ○리 일원	광시 공영주차장 포장공사 1식	2017.05.30	2017.08.27	
17	주차장	○○면 ○리 노상주차장 주차선 위치변경 공사	○○면 ○리 지내	주차장 주차선 위치변경 1식	2017.07.21	2017.08.17	
18	주차장	○○리 임차주차장 포장공사	○○읍 ○리 일원	주차장 포장	2017.08.14	2017.09.27	
19	주차장	○○리 게이트볼장 앞 임차주차장 조성공사	○○읍 ○리 일원	주차장 조성 1식	2017.09.13	2017.10.10	
20	주차장	○○주차장(○○리) 조성공사	○○읍 ○리 일원	주차장 조성 1식	2017.09.26	2017.12.24	
21	주차장	○○주차장(○○리) 조성공사	○○읍 ○리 일원	주차장 조성 1식	2017.09.26	2017.12.24	
22	주차장	2017년 ○○읍 ○○4리 주차장 포장 공사	○○읍 ○리 일원	주차장 조성 1식	2017.10.11	2017.11.07	
23	주차장	2017년 ○○읍 ○리 주차장 포장공사	○○읍 ○리 일원	주차장 조성 1식	2017.10.16	2017.12.14	

※ 예산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공사³⁾ 및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0]과 같이 “○○~○○간(○○○○호) 도로확포장공사”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였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리고 “○○~○○간(○○○호) 도로확포장공사” 등 22개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17개의 건설공사는 준공하였다.

[표20]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간(○○○호) 도로확포장공사	2014. 11. 11	2015. 11. 17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	○○~○○간(○○○○호)	2016. 04. 11	2016. 11. 19	반영	미반영	미제출	미신고	위반 (준공)

- 3) 2016. 5. 31 이후 발주기준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또는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의 도로공사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도로확포장공사							
3	○○~○○간(○○○○○호) 도로확포장공사	2016.05.27	2016.11.2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4	○○~○○간(○○○○○호) 도로확포장공사	2017.04.04	2018.03.2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5	○○~○○간(○○○○○호) 도로확포장사업	2017.06.27	2018.06.28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6	○○~○○간(○○○○○호) 도로확포장사업	2017.03.31	2017.09.26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7	○○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14.05.07	2014.11.02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8	○○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14.10.20	2014.12.08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9	2015 소형임차주차장 조성사업	2015.04.20	2015.05.18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0	2015년 소형임차주차장 조성사업	2015.09.08	2015.10.06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1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15.10.14	2016.01.11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2	○○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15.10.28	2016.07.20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3	2016. 임차주차장 조성사업	2016.04.21	2016.06.19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4	○○읍 ○○리 ○○주차장 조성공사	2017.04.21	2017.05.18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5	○○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017.05.12	2017.06.25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6	○○ 공영주차장 포장공사	2017.05.30	2017.08.27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7	○○면 ○○리 노상주차장 주차선 위치변경 공사	2017.07.21	2017.08.17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8	○○리 임차주차장 포장공사	2017.08.14	2017.09.27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19	○○리 게이트볼장 앞 임차주차장 조성공사	2017.09.13	2017.10.10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0	○○주차장(○○리) 조성공사	2017.09.26	2017.12.2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21	○○주차장(○○리) 조성공사	2017.09.26	2017.12.2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22	2017년 ○○읍 ○○○리 주차장 포장 공사	2017.10.11	2017.11.07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3	2017년 ○○읍 ○○리 주차장 포장공사	2017.10.16	2017.12.1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 예산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예산군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와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라. 예산군 ○○○○사업소

예산군 ○○○○사업소는 아래 [표21]과 같이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6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21] ○○○○사업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

연 번	구 분	사업명	공사위치	사업량	착공일	준공 (예정)일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면○○리	Q=70톤/일 관로=2.7km	2014.08.19	2017.05.24	
2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면 ○○리	Q=380톤/일 관로=9.2km	2016.05.24	2018.12.30	
3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면 ○○리	Q=160톤/일 관로=7.3km	2016.05.24	2018.12.3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면 ○○리	Q=70톤/일 관로=2.4km	2016.06.08	2018.12.30	
5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면 ○리	관로=820m	2017.06.15	2017.09.01	
6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면 ○○리	관로=420m	2017.07.19	2017.10.30	

※ 예산군 ○○○○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위 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라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 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2]와 같이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4개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미반영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그 중 3개의 건설공사는 준공하였다.

그리고 순환골재 등을 사용한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의 건설공사는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표22] ○○○○사업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현황

연 번	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설계 반영 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신고여부	비고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1	○○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2014.08.19	2017.05.24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2	○○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2016.05.24	2018.12.30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공사중)
3	○○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2016.05.24	2018.12.30	반영	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4	○○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2016.06.08	2018.12.30	반영	반영	미제출	-	위반 (공사중)
5	○○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2017.06.15	2017.09.01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6	○○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2017.07.19	2017.10.30	미반영	미반영	-	-	위반 (준공)

※ 예산군 ○○○○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예산군 ○○○○사업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와 제34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마. 예산군 ○○과(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업무 소홀)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의 통보와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국 ○○○○과 소관의 순환골재 등에 관한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내용 통보,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예산군 ○○과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을 미준수하고 사용계획서의 미제출 및 사용실적을 미보고한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3]과 같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을 위반한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

[표23]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 위반 현황

구분	대상(위반) 건설공사	설계 미반영(미사용)	사용계획서 미제출	사용실적 미보고	비고
○○과	1(1) 0(0)	0 -	0 -	1 -	준공 준공 전
○○○○과	1(1) 0(0)	1 -	1 -	1 -	준공 준공 전
○○○○과	18(18) 5(5)	18 5	1 0	1 -	준공 준공 전
○○○○사업소	3(3) 3(3)	3 1	0 2	0 -	준공 준공 전
계	23(23) 8(8)	22 6	2 2	3 -	준공 준공 전

※ 예산군 제출자료 재구성

상기와 같이 예산군 ○○과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에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공주시장, 서산시장, 예산군수는

- [시정]** ① 건설공사가 준공된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사업) 발주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의 조치하고,
- ②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사업)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사용계획서의 제출 및 사용실적 보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 ③ 건설공사(사업) 발주부서와 환경관련 부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